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가. 의안번호 : 제773호

나.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다. 제출일자 : 2019년 6월 28일

라. 회부일자 : 2019년 6월 28일

2.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3급 이상 실·국·본부 수가 확대됨에 따라 행정기구 신설을 통한 시정 핵심사업 추진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
 - (1) 시·도 자율신설기구 근거 신설에 따른 목적규정 개정(안 제1조)
 - (2) 경제활성화 핵심사업 실행력 확보를 위해 ‘경제일자리기획관’을,

사람중심 서울형 복지 구현을 위해 '복지기획관'을 보조기구로 신설
(안 제4조)

- (3) 시민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합의제 행정기관인 '서울민주주의
위원회' 신설(안 제128조부터 제130조)

4.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강상원)

가. 개정안의 개요

- 개정안은 대통령령의 개정¹⁾(2019.4.30.)으로 3급 이상 실·국·본부 수가 확대됨(18 → 21개)에 따라 기존 법외 임시기구로 운영해오던 ‘복지기획관’과 ‘보행친화기획관’을 정규기구화 하려는 것임.
- 또한, 경제일자리기획관, 복지기획관을 실행력을 수반하는 계선조직으로 하고, 시민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합의제 행정기구인 ‘서울민주주의위원회’를 신설하여 시정운영 핵심과제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고자 함.
- 이에 따라 서울시 본청은 6실 5본부 8국에서 6실 5본부 10국(2개 국 증가)으로 변경되며, 합의제행정기관은 기존 2개소에서 3개소로 늘어나게 됨.

1)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시·도의 기구설치기준에 대한 특례) ① 시·도는 별표 1에 따른 시·도의 실·국·본부 설치기준 상한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해당 시·도의 조례로 실·국·본부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추가로 설치하는 실·국·본부의 존속기간은 2년의 범위에서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③ 시·도는 제1항에 따라 실·국·본부를 추가로 설치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추가로 설치한 실·국·본부의 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존속기간의 연장·삭제 또는 추가로 설치한 실·국·본부의 폐지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실·국·본부를 추가로 설치한 경우 그 설치 내용,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및 조치 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평가의 항목,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 본청 조직 개편안 〉

구 분	개편 전		개편 후	
	직급	6실 5본부 8국 2위원회	직급	6실 5본부 10국 3위원회
실	1급	기획조정실, 경제정책실, 복지정책실, 도시교통실, 안전총괄실, 도시재생실	1급	기획조정실, 경제정책실, 복지정책실, 도시교통실, 안전총괄실, 도시재생실
본부	2·3급	문화본부, 기후환경본부, 주택건축본부	2·3급	문화본부, 기후환경본부, 주택건축본부
	3급	지역발전본부(한시)	3급	지역발전본부(한시)
	소방정감	소방재난본부	소방정감	소방재난본부
국	2·3급	행정국, 재무국, 평생교육국, 관광체육국, 시민건강국, 도시계획국, 푸른도시국, 물순환안전국	2·3급	행정국, 재무국, 평생교육국, 관광체육국, 시민건강국, 도시계획국, 푸른도시국, 물순환안전국,
	3급	-	3급	경제일자리기획관, 복지기획관
합의제	2·3급	감사위원회	2·3급	감사위원회, 서울민주주의위원회
	4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4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나. ‘자율 신설기구’에 대한 근거규정 등(안 제1조, 안 부칙 제2조)

- 지난 4월 실질적 지방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행정기구·정원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설치와 운영의 자율성이 확대되어, 현행 시·도에 설치할 수 있는 실·국·본부의 수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게 되었음(제9조의2 신설).
- 서울시는 이번 특례 조치로 기존의 18개 실·국·본부 외에 3개 기구를 추가

할 수 있게 되었고, 기존 보좌기관인 '경제일자리기획관'과 법외임시기구인 '복지기획관(신설)'을 보조기구로 편입하고, 합의제 행정기구인 '서울민주주의위원회'를 신설하게 되었음.

- 이에 따라 조례의 목적에 관계법령의 특례근거 규정을 포함하고, '부칙'에 자율적으로 신설하게 되는 경제일자리기획관, 복지기획관, 서울민주주의 위원회에 대해 존속기한을 2021년 7월 14일까지로 명시하였음.
- 이는 지방행정기구·정원규정에서 특례로 추가 설치되는 기구의 존속 기한을 2년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되, 성과평가를 통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거나 상시기구로 전환·폐지를 결정하도록 한데 기인한 것임.
- 다만, 이번 확대조치로 2개의 법외 임시기구(복지기획관, 보행친화기획관)가 정규기구화 됨에도 불구하고, 국제협력관 등 4개의 위법기구가 여전히 존치되고 있으므로, 기구의 통·폐합을 통해 위법성 논란을 해소하고 사업의 합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근본 대책이 요구됨.

〈 조례 개정 후 법외 임시기구 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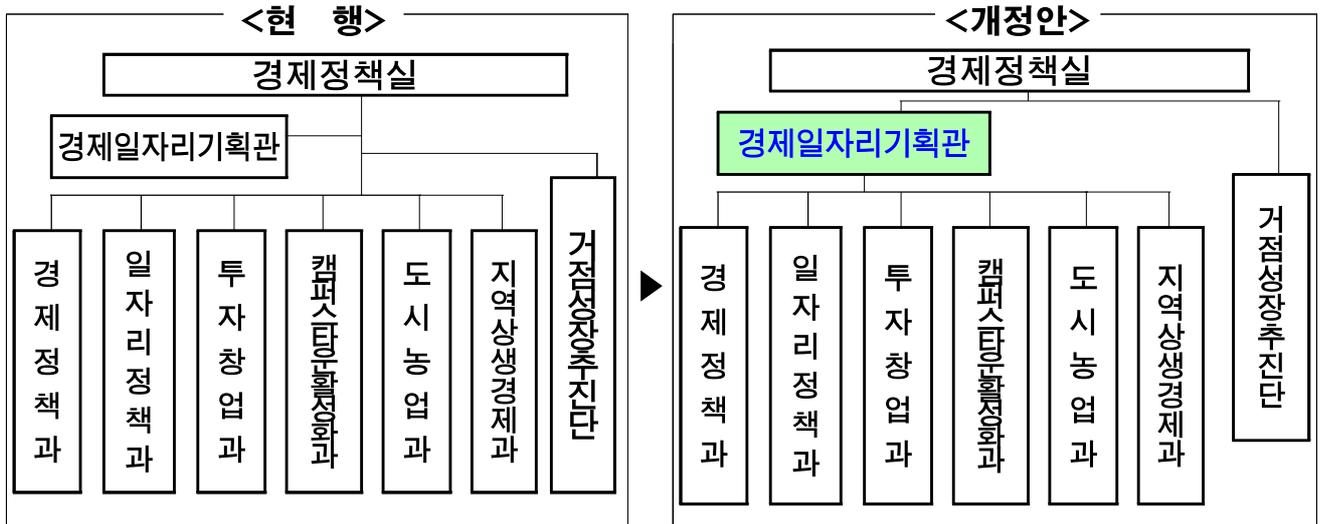
기 구 명	설 치 근 거	업 무 내 용
국 제 협 력 관	시장방침(2013. 12. 2)	• 국제교류분야 총괄·조정
대 기 기 획 관	시장방침(2011. 11. 29)	• 기후, 환경, 에너지관련 업무 총괄
재 생 정 책 기 획 관	시장방침(2012. 9. 28)	• 도시계획 및 개발업무 총괄
주 거 사 업 기 획 관	시장방침(2011. 11. 29)	• 재정비, 주거환경관련 업무 총괄

다. 보조기관의 추가(안 제4조제3항 신설)

- 개정안은 보좌기관²⁾으로 운영하던 ‘경제일자리기획관’을 보조기구³⁾로 전환하는 한편, 법외기구로 운영해 오던 ‘복지기획관’과 ‘보행친화기획관’을 각각 보조기관과 보좌기관으로 신설하였음.

(1) 경제일자리기획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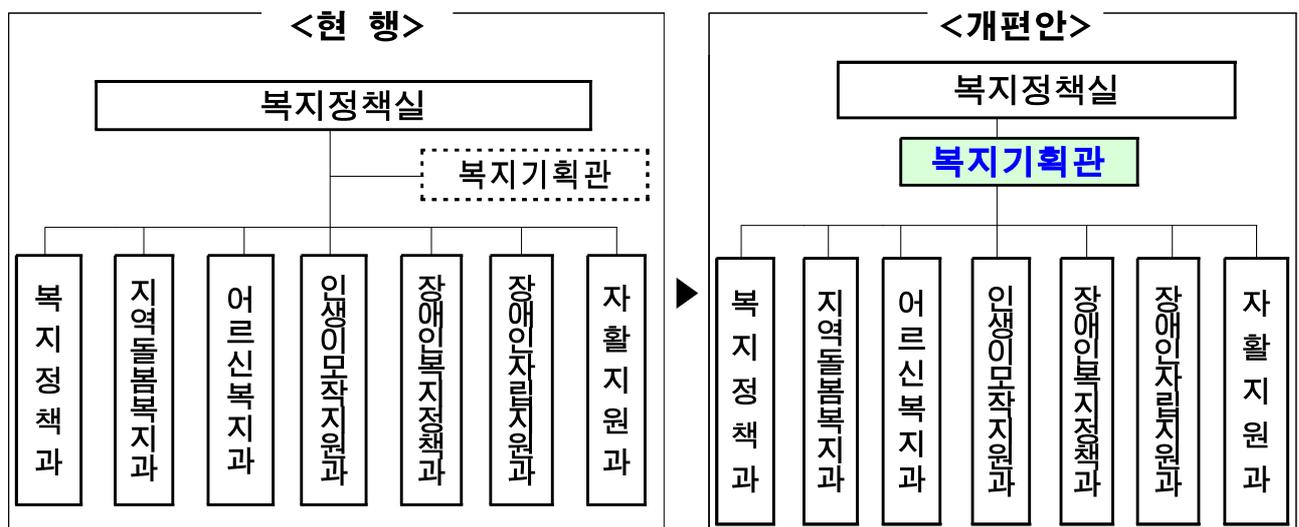
- 경제활성화 핵심사업의 실행력을 확보하고자 경제정책실장 밑에 경제일자리기획관(2·3급 보좌기구)을 실·국·본부 단위의 보조기구(3급)로 개편하게 됨.
- 경제일자리기획관을 조직의 근간을 이루는 계선 보조기관으로 둬으로써 행정목표의 달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권한의 책임과 한계가 명확하게 되며 부서장의 행정 통솔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음.



2) 보좌기관은 지방행정기관이 그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기관장이나 보조기관을 보좌함으로써 행정기관의 목적달성에 공헌하는 기관을 말한다.
 3) 지방행정기관의 의사 또는 판단의 결정이나 표시를 보조함으로써 행정기관의 목적 달성에 공헌하는 기관을 말한다.

(2) 복지기획관

- 급증하는 복지수요에 대응하고 사람중심의 복지 정책을 펼치고자 그 동안 법외기구로 운영 중인 복지기획관을 정규기구화 하여, 복지정책실장 밑에 실·국 단위의 보조기구(3급)로 개편하게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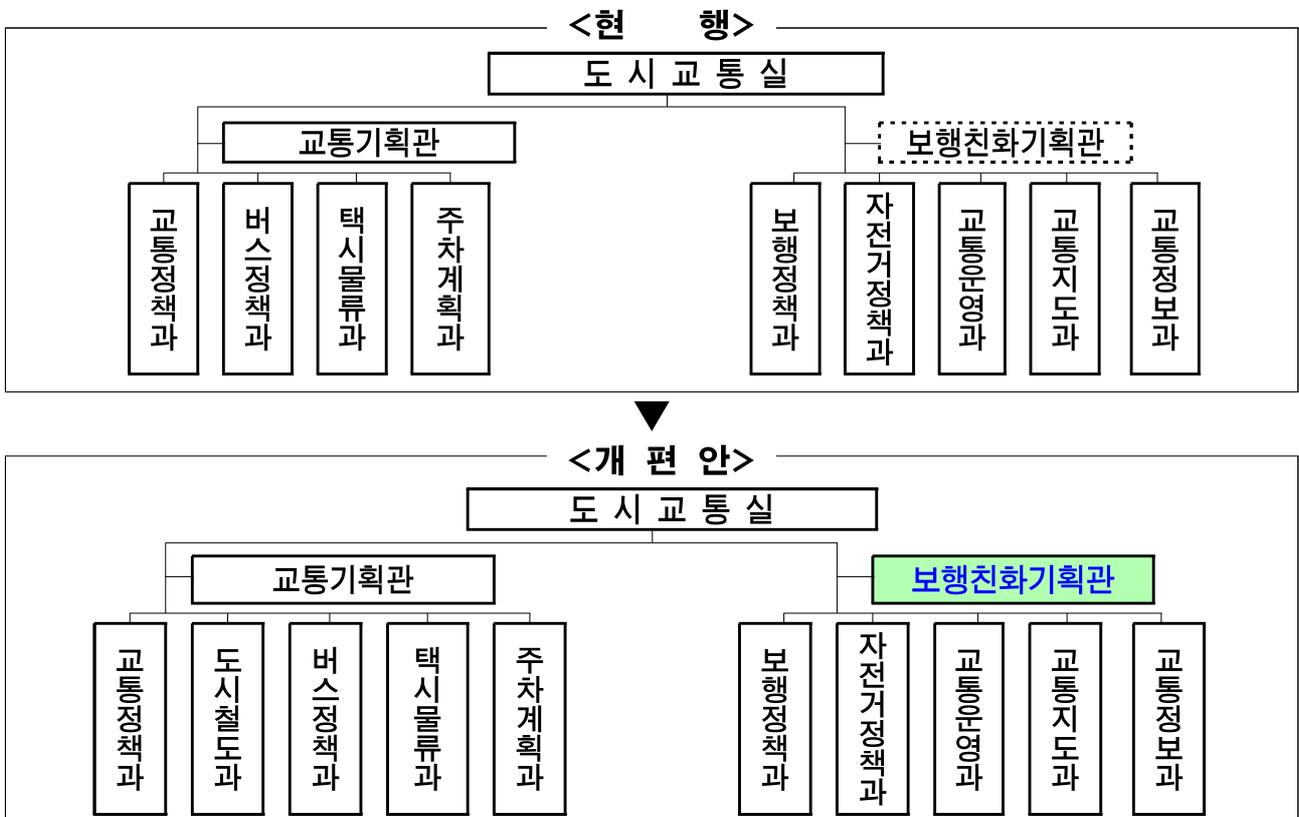
- 양극화, 고용불안, 고령화 등으로 복지수요가 급증하는 반면, 이에 대한 지원은 절대적으로 부족해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될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명령권·정책결정권·집행권을 보유한 정규 보조기구를 통해 지역별 빈틈 없는 복지서비스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보행친화기획관

- 보행친화도시 확산을 위한 도심도로 공간 재편, 생활권 보행환경 개선 등 사람중심의 교통정책을 펼치고자 법외기구로 운영 중인 보행친화

기획관을 2·3급 보좌기구로 편입하게 됨.

- 사람 중심의 보행과 자전거 이용편의의 획기적인 개선이 요구되고 교통 정책의 공공성과 책임성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보행친화기획관의 정규 기구화를 통해 이러한 정책방향을 조직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입지를 마련하게 되었음.



라.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신설(안 제128조부터 제130조까지)

(1) 서울민주주의위원회의 설치(안 제128조)

- 개정안은 관련법규 등(「지방자치법」 제116조4), 「서울특별시 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 제7조⁵⁾)에 따라 시장 직속으로 합의제행정기관인 ‘서울민주주의 위원회’(이하 ‘민주주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음.

-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합의제 행정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사무 중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법령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음.
- 그러나 민주주의위원회의 주요 기능과 목적이 통상 합의제 행정기구로 설치하는 감사위원회와 같이 독립성을 요구하거나, 의사결정에 있어 다수의 의사결합이 요구된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움.
- 다만, 지난 제286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 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가 공포·시행(2019.5.19.)되어 조례상으로 설치근거에 대한 법적 기반은 확보되었음.

-
- 4) 「지방자치법」 제116조(합의제행정기관)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5) 「서울특별시 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 제7조(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시민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다음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서울민주주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1. 시민민주주의 계획에 관한 사항
 2. 민관협치에 관한 사항
 3. 서울특별시 위원회 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4. 마을공동체 계획에 관한 사항
 5. 시민참여·숙의 예산제 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6. 위원회 사무기구의 조직 및 정원 요구에 관한 사항
 7. 위원회의 예산 요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8. 위원회 운영규정의 제정 및 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9. 위원의 제척·기피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시장 소속으로 설치한다.

(2) 민주주의위원회 위원장의 권한(안 제129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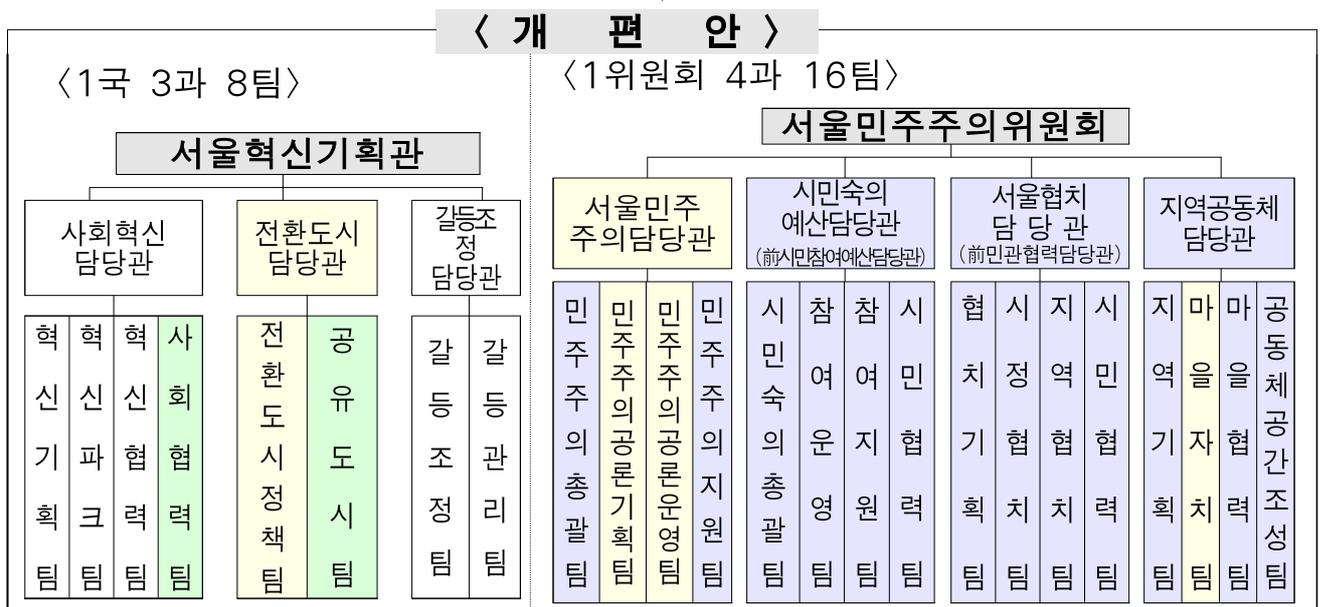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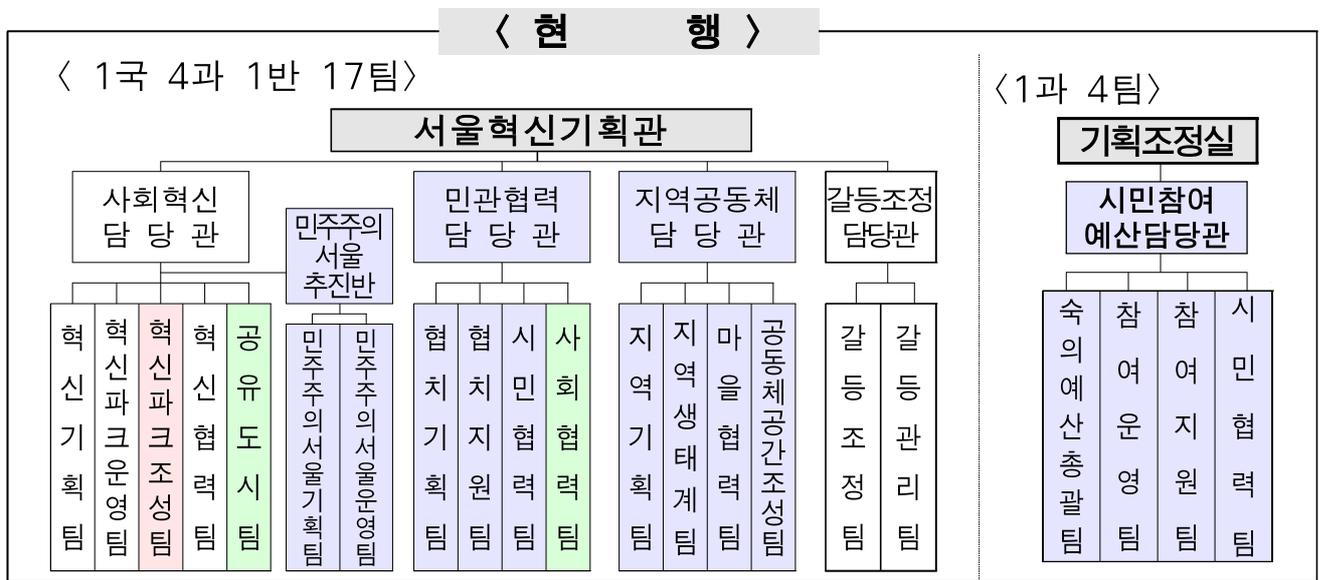
- 개정안은 위원회에 ‘서울민주주의위원장(이하 ‘위원장’)을 두고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 위원장은 4담당관 16팀의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고 있는 바, 기존 합의제 행정기관인 ‘감사위원회(3담당관)’나 ‘시민옴부즈만위원회(6팀)’와 비교할 때, 합의제행정기관으로는 기구의 규모와 인력이 지나치게 방대함.
- 특히 그동안 서울혁신기획관과 기획조정실에서 정책기획과 집행을 행사해 오던 업무가 대부분이라 합의제 행정기관 보다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음.

(3) 위원장의 소관사무(안 제130조)

- ‘민주주의위원회’ 위원장이 관장하는 소관사무는 ▶시민민주주의 정책 및 계획에 관한 사항, ▶시민참여·숙의 예산제 운영 및 계획에 관한 사항, ▶민관협치 정책 및 계획에 관한 사항, ▶마을공동체 운영 및 계획에 관한 사항, ▶내부 규정의 제정 및 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위원회 예산요구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고 있음.
- 민주주의위원회의 조직 구성을 살펴보면, 대부분 기존 서울혁신기획관에서 담당하던 업무와 부서가 이관되거나 새로 신설되는 것임.

- 기획조정실 소관의 '시민참여예산담당관'이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아래 '시민숙의예산담당관'으로, 서울혁신기획관 소관의 '민관협력담당관'과 '지역공동체담당관'이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아래 각각 '서울협치담당관'과 '지역공동체담당관'으로 개편되며, '민주주의서울추진반'은 폐지하고 '서울민주주의담당관'으로 확대 개편됨.

〈서울민주주의위원회 및 서울혁신기획관 조직변경(안)〉



신설
 부서 내 이관
 부서 외 이관
 감축

- 한편 민주주의위원회의 신설로 서울혁신기획관은 1국 4과 1반 17팀에서 1국 3과 8팀으로 기구가 대폭 축소되어, 국(局) 단위의 기구로서 존속의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시 됨.
 - 지방행정기구·정원규정⁶⁾에서 정한 기구설치의 일반요건은 국(局)은 소관 업무의 성질이나 양이 4개 과(課) 이상의 하부조직이 필요한 경우에 설치하도록 하며, “과(課)” 단위의 경우는 12명의 인력(5급 4명 이상의 정원)이 필요한 업무량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제6조).
 - 존치하는 서울혁신기획관의 소관 업무량은 3개 과(課)에 불과하며, 이 중 ‘갈등조정담당관’과 ‘전환도시담당관’(신설)은 각각 2개 팀으로만 운영되어 대통령령에서 규정한 기구설치의 일반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므로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국으로 통·폐합되어야 할 것임.
- 향후 행정기구의 관리는 해당 조직이 수행하여야 할 사무 또는 사업의 성질과 양은 물론이고, 기구의 설치 요건을 정한 관계 법령에 따른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상태에서 운영되어야 할 것임.
- 한편, 기획조정실 소관의 ‘시민참여예산담당관’은 민주주의위원회 소관의 ‘시민숙의예산담당관’으로 확대 개편되어, 시민숙의와 공론화가 중요한 생활밀착형·지역협치형 사업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예산편성과 심의를 주된 기능으로 할 예정임.

6)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기구설치의 일반요건) ① 국은 특별한 경우 외에는 소관 업무의 성질이나 양이 4개 과 이상의 하부조직이 필요한 경우에 설치한다.
 ④ 과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서 특별한 경우 외에는 12명(시·도는 5급 4명 이상, 시·군·자치구는 6급 4명 이상 포함) 이상의 정원이 필요한 업무량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한다.

- 민선7기 서울특별시장 공약실천계획서에 따르면, 예산과정에 시민참여를 확대하고자 2020년도에는 초기 시범사업으로 시 예산의 1%인 2천억원 (시민참여예산 700억원 포함), 2021년에는 3%인 6천억원, 2021년에는 5%인 1조원을 숙의예산으로 구상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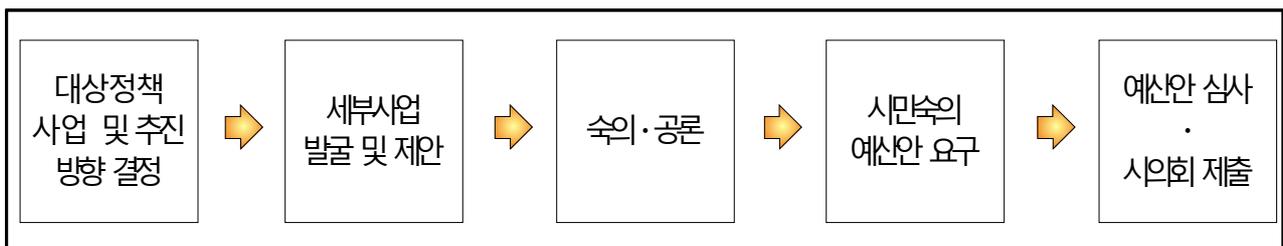
〈시민숙의예산제 운용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6월
추진계획	기본프로세스 개발	시범사업 추진	기본계획 수립 본격추진	제도운용 및 정착	제도 운용 및 정착
투자수요	20	200,000	600,000	1,000,000	1,000,000

자료 : 민선7기 서울특별시장 공약실천계획서(p.663)

〈시민숙의예산제 추진절차〉



자료 : 민선7기 서울특별시장 공약실천계획서(p.662)

- 그러나 제시된 숙의예산 규모는 2018년도 일반회계 순계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이중 법정 의무부담 경비를 제외하고 서울시가 실제 투자 가능한 가용재원⁷⁾ 규모로 보면, 일반회계 가용재원의 25.6%에 해당하게 됨.

7) 가용재원은 일반적으로 의무적인 경상경비를 제외하고 자치단체가 투자사업에 동원할 수 있는 재원을 말함. 즉, 세입에서 법적으로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경비(인건비, 기준경비, 법정교부금, 각종 보조금의 지방비부담,

〈2019년도 일반회계 예산 가용재원 규모 추정〉

○ 총 계	: 24조 1,683억원
○ 순 계	: 20조 9,186억원 (총계 - 회계 간 전출 3조 8,605억원)
○ 가용재원	: 3조 9,137억원 (순계 - 의무부담금 17조 49억원)
- 법정지원금	: 7조 8,798억원 (자치구 4조 6,455억원, 교육청 3조 2,343억원)
- 채무상환 등	: 2,041억원 (채무상환 100억원, 반환금 등 189억원, 기금적립 1,752억원)
- 출연금	: 5,845억원 (법정 출연 1,975억원, 기타 출연기관 3,870억원)
- 기금 전출	: 2,629억원 (11개 기금, 12개 계정)
- 국고보조금 부담	: 6조 9,635억원 (국고보조금 4조 3,522억원, 시비 매칭액* 2조 6,113억원)
- 행정운영경비	: 8,986억원 (인건비 8,553억원, 기본경비 433억원)
- 예비비	: 2,115억원

자료 : 알기쉬운 2019 서울시 예산

- 서울시정에 대한 다양한 공론화의 장과 거버넌스 행정을 구축해 시민참여를 확대해야 하는 필요성은 인정되나, 선거를 통한 대의민주주의를 대체하려 하거나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지방의회의 고유 권한을 약화시키는 정도로까지 발전하는 것은 경계가 필요함.
- 현재에도 시민참여예산의 심사에 있어 시의회의 예산심의권이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가용재원의 약 1/4를 시민숙의예산으로 제출할 경우에는 시의회의 예산심의를 있어 또 다른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음.
- 한편, 서울시 예산규모의 증가로 인해 일반회계 예산의 5%를 숙의예산

채무상환비, 법령이나 조례로 협약을 맺어 지출해야 하는 경비 등) 등을 뺀 나머지를 가용재원으로 산출한다. 혹은, 계속해서 추진해야 하는 사업, 지방채무가 투입된 사업, 자치단체의 기관운영에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경비 까지 제외시켜 산출함.

으로 편성하는 경우 그 규모는 1조 5천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특정한 목표연도를 정해 숙의예산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내년도 시범사업 결과를 보고 규모의 확대와 본격 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임.

마. 종합의견

- 서울시는 지방행정기구·정원규정의 개정으로 3급 이상 실·국·본부 수가 확대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시행하게 되었음.
- 시정 핵심과제의 실행력을 담보하려는 조직개편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빈번한 조직개편(2011년 하반기 이후 20회 시의회에 제출됨) 과정에서 발생한 혼란과 피로감, 조직팽창과 부서 통·폐합·이관에 따른 행·재정적 부담 등이 가중되는 부작용 또한 적지 않음.
- 특히, 크고 작은 조직개편이 반복되면서 지방행정기구·정원규정에서 규정한 기구설치의 일반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향후에는 반드시 필요 업무량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기구를 설치하되, 이렇지 못한 기구는 과감하게 통·폐합을 추진하여 조직운영과 관리의 엄정성을 높여야 할 것임.
- 한편, 이번 개정안은 지난 제287회 정례회에서 부결(6.17)된 이후, 같은 내용으로 6월 26일 하루 동안의 입법예고를 거친 후 28일 제출되어 같은 날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8)은 행정기구나 정원 조례의 제·개정 시 입법예고를 의무화하고 있고, 「행정절차법」 9)과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10)는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기한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정하고 있음.
- 이는 시민의 권리와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례를 입법하는 경우,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사전에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기 위한 법적 절차이며, 입법화 과정에 시민참여를 확대하려는 취지임.
- 지금껏 행정기구 개편안과 정원 조정에 대해 입법예고를 하루 만에 완료한 적이 없다는 점에서 보면, 이번 개정안과 같이 특별한 사정 등을 남용할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조례 심사권과 시민의 정당한 알권리를 침해할 여지가 크므로, 단체장의 입법 전횡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입법예고 기간 단축 허용범위를 구체화하도록 조례 개정의 입법이 필요할 것임.
- 또한, 지난 번 부결과과정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우려를 표명했던 ▷ 서울민주주의 위원회의 신설로 인한 대의민주주의제도의 훼손, ▷ 과도한 시민숙의예산으로 인한 시의회의 예산심의권 침해, ▷ 기능이 축소된 서울혁신기획관의 통·폐합 등에 대한 근본적인 치유책 없이 동일한 내용의 안건을 제출해 심의를 요청하는 것은 지방의회에 부여된 의안 심의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 될 수 있음.

8) 제38조(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규칙의 입법예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나 정원의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규칙의 제정·개정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거나 기구·정원의 감축 또는 하위직으로의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지만 상위직으로의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입법예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9) 제43조(예고기간)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자치법규는 20일) 이상으로 한다.

10) 제8조(예고기간) 입법예고 기간은 예고할 때 시장이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 이상으로 한다.

【참고자료 1】

관 련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16조(합의제행정기관)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기구설치의 일반요건) ① 국은 특별한 경우 외에는 소관 업무의 성질이나 양이 4개 과 이상의 하부조직이 필요한 경우에 설치한다.

② 실·본부[본부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나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한한다]는 업무의 성질상 국으로서는 그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설치한다. 이 경우 실·본부 밑에는 국 또는 과를 둘 수 있다. <개정 2012. 6. 29., 2019. 4. 3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군·자치구(이하 "시·군·구"라 한다)는 업무의 성질상 과로서는 그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실을 설치한다. <신설 2019. 4. 30.>

④ 담당관은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정책의 기획이나 계획의 입안·조사·분석·평가와 행정 개선 등에 관하여 기관장이나 보조기관(국장은 제외한다)을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하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실장 밑에 설치하며, 담당관 밑에는 과를 둘 수 없다.

⑤ 과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서 특별한 경우 외에는 12명[시·도는 5급 4명 이상, 시·군·구는 6급 4명 이상 포함] 이상의 정원이 필요한 업무량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한다.

1. 국의 소관 업무(국이 설치되지 아니한 시·군·구의 경우에는 그 소관 사무를 말한다)를 업무의 양이나 성질에 따라 수 개로 분담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한계가 분명하고 업무의 독자성과 계속성이 있을 것

⑥ 지방자치단체의 본청에 설치하는 실·국과 실·과·담당관은 그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부단체장(시의 경우에는 행정부시장을, 도의 경우에는 행정부지사를 말한다)의 지휘·감독 하에 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공보기능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직접 보좌하기 위하여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2. 효율적인 재난안전대응을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

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경우 시·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기획기능과 집행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보조·보좌기관인 실·국과 실·과·담당관을 폐지하고 그 폐지된 기관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별도의 사업소를 신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실·국 및 과·담당관의 명칭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국은 본부·단·부로, 과·담당관은 팀으로 각각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명칭을 달리 정한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이 영을 적용함에 있어서 실·국 또는 과·담당관으로 본다.

제9조의2(시·도의 기구설치기준에 대한 특례) ① 시·도는 별표 1에 따른 시·도의 실·국·본부 설치기준 상한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해당 시·도의 조례로 실·국·본부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제9조의2(시·도의 기구설치기준에 대한 특례) ① 시·도는 별표 1에 따른 시·도의 실·국·본부 설치기준 상한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해당 시·도의 조례로 실·국·본부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추가로 설치하는 실·국·본부의 존속기간은 2년의 범위에서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③ 시·도는 제1항에 따라 실·국·본부를 추가로 설치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추가로 설치한 실·국·본부의 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존속기간의 연장·삭제 또는 추가로 설치한 실·국·본부의 폐지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실·국·본부를 추가로 설치한 경우 그 설치 내용,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및 조치 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평가의 항목,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36조(기구와 정원조례의 제안과 의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안을 해당 지방의회에 제안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구와 정원의 조정으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경비를 나타내야 한다.

②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안한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할 때 지방행정조직의 합리적 운용과 건전한 재정운동을 위하여 기구를 축소하거나 기구를 하나로 묶어서 합치거나 폐지하여 합치는 것, 정원을 감축하는 것을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제1항에 따라 제안된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행정조직의 안정적 운용과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될 수 있는 대로 빠른 시일내에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

제7조(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시민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다음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서울민주주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1. 시민민주주의 계획에 관한 사항
 2. 민관협치에 관한 사항
 3. 서울특별시 위원회 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4. 마을공동체 계획에 관한 사항
 5. 시민참여·숙의 예산제 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6. 위원회 사무기구의 조직 및 정원 요구에 관한 사항
 7. 위원회의 예산 요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8. 위원회 운영규정의 제정 및 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9. 위원의 제척·기피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시장 소속으로 설치한다.

【참고자료 2】

서울시 3급 이상 기구 현황

□ 기구 현황 총괄 : 53개(정규기구 50 + 한시기구3)

정원	계	대통령령 별표에 규정(33) 및 한시기구(3)				행자부 승인(16) 및 대통령령 규정(1)
		소계	실·국·본부	보좌기구	의회사무처 및 합의제	소속기관
계	53	36	19	15	2	17
1급	8	8	기획조정실 경제정책실 복지정책실 도시교통실 안전총괄실 도시재생실	여성가족정책실	사무처	
소방정감	1	1	소방재난본부			
2·3급	23	19	문화본부 기후환경본부 행정국 재무국 평생교육국 관광체육국 시민건강국 도시계획국 주택건축국 푸른도시국 물순환안전국	비서실 대변인 비상기획관 정책기획관 교통기획관 시민소통기획관 경제기획관	감사위원회	상수도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 도시기반시설본부 인재개발원 (※ 대통령령, 2급)
3급	18	8	지역발전본부 (한시)	스마트도시정책관 재정기획관 서울혁신기획관 노동민생정책관 안전총괄관 문화시설추진단 (한시) 남북협력추진단 (한시)		서울물연구원 상수도부본부 시립대 행정처 도기본 시설국 도기본 도시철도국 교통방송 어린이병원, 서북병원 은평병원, 서울대공원
3급상당 (연구관)	3					보건환경연구원 서울역사박물관 시립미술관